

의안번호	2200837
의 퇴 인	김장겸 의원
회 답 일	2024.9.2.
(추계번호	24B1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제1항)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의무규정
3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3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0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의무규정
4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4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제1항)	—	- 미대상 - 난임휴가 지원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요는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8호)을 통하여 재정 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1항)	×	• 미첨부 – 개정안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의 ‘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용절차의 변화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의 증가량을 산출하여야하나, 현 시점에서 장래의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관한 고용 금의 추가재정소요는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8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 본문 참조
3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3항)	—	• 미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이 연장될 경우 제도 사용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기간의 실질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조항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4항)	—	• 미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기간이 연장될 경우 제도 사용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기간의 실질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조항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제1항)	—	• 미대상 –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난임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8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의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6조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
 - 다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별 사용기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실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23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²⁾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이 401,910원이고, 1인당 평균 배우자출산휴가의 수급액이 395,000원 이른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상한액에 근접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표 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수(A)	1,059	18,720	18,270	16,168	15,797
총 수급액(B)	397	7,050	6,904	6,146	6,240
1인당 수급액(B/A)	0.375	0.377	0.378	0.380	0.395

자료: 고용노동부

1)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생략>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14호

- 다만, 개정안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용절차의 변화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의 증가량을 산출하여야하나, 현시점에서 장래의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사업주에 대한 “고지”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사용인원 및 사용일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증가 규모를 사전에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³⁾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